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. 14.

발 의 자 : 서일준 · 김승수 · 김용판
박진 · 양금희 · 윤한홍
이용 · 이주환 · 조명희
최형두 · 추경호 · 하영제
홍문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·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주체, 자료제출 및 공유 요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7조).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공정거래위원회는”을 “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정거래위원회”를 “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정거래위원회는”을 “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”를 “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

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공개정보 검색 등) ① <u>공정거래위원회</u>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.</p> <p>②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<u>공정거래위원회</u>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<u>공정거래위원회</u>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27조(공개정보 검색 등) ① <u>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은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----- 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-----

-----.